

법무법인 (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06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 층(논현동, 영풍빌딩) 전화:02-2007-6800 팩스:02-2007-6805

2017 년 2 월 23 일

수 신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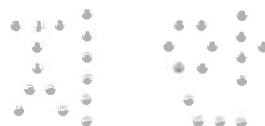
참 조 : 오 상 희 선임님

발 신 : 법무법인(유한)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제 목 : 세외수입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관련 검토의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세외수입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관련 검토의견 송부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본 공문에 첨부된 메시지는 기밀사항이며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귀하지정 수신이 아니거나 잘못 받으셨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배포, 복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수신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135-74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5층 전화:02-2007-6800 팩스:02-2007-6801

수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참조: 오상희 선임님

제목: 세외수입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관련 검토의견

일자: 2017. 2. 22.

1. 질의의 요지

귀 원은 2015. 7. 28. 서울시와 성수 IT 앵커시설(성수 IT 종합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이하 “본건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 관리운영 및 IT 중소기업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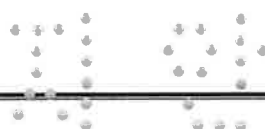
귀 원은 성수 IT 종합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면서 입주기업들로부터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을 서울시 명의의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고 있고, 본건 협약서에 의하면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울시 계좌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원은 (1) 세입조치가 지연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2) 본건 협약서에는 연체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3) 가산금이 발생한다면 연체료 징수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음에도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검토

가. 질의(1)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귀 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건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해당 조례 제 14 조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4 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 1 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협약서 제 8 조 제 5 항에는 수탁기관인 귀 원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입주기업들로부터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본건 협약서 제 8 조 제 5 항에서는 귀 원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매 분기 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울시 금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체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 80 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 80 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80 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 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 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 년에 1 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퍼센트
2. 연체기간이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퍼센트
3. 연체기간이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퍼센트
4. 연체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 퍼센트

②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귀 원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일종의 사용료라 볼 수 있고, 그 사용료를 본건 협약서 제 8 조 제 5 항의 기한 내에 서울시에 세입조치를 시키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체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원이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을 받고 있는 성수 IT 종합센터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가 임차를 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 4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임차한 재산도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2)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본건 협약서에는 연체료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건 협약서 제 23 조 제 1 항에서는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협약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공유재산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 80 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체료 징수가 필요한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의 선택에 의해 부과 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량행위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료의 부과는 법령상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본건 협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귀 원은 성수 IT 종합센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단순히 서울시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점, 귀원이 입주기업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은 귀 원의 이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기존에도 귀 원과 서울시는 본건 협약서에 따라 매분기 말 10 일 내에 세입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해 세입 조치를 한 점, 귀 원이 서울시로부터 세입조치가 지연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않았고 기존에도 그와 같은 연체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조치가 지연되었다고 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일 귀 원이 세입조치를 지연한 것이 귀 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및 대관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귀 원이 서울시에 세입조치 할 수 없거나 서울시로부터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경우 등)에는 연체료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안

LEE KIM & PARTNERS

다. 질의(3)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 80 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에서는 납부기한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연체료 징수에 대해 사전고지를 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연체료 징수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귀 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그러한 고지 없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을 소명하여 연체료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송재순

